

2024년 4분기

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
□ 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집행액	집행내역
	세부사업	통계목		
도시철도 토목부	하남선(5호선 연장) 1-2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	배상금 등	2,238,608	○ 지 출 일: '24.11.28. ○ 지급대상: 쌍용건설 ○ 지급사유: 화해권고 결정

□ 예비비 사용 사유

- 『하남선(5호선 연장) 1-2공구 공사대금 청구』 소송 화해권고 판결금 지급
 - 원고는 4,5차 공사의 공기가 연장된 것이 사업계획 승인 지연, 지장물 이설 지연, 인접공구 공정간섭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,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음.
 - 1심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을 '24.11.30일까지 미지급시 지연손해금(연 12%)이 가산되므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

붙임 1. 하남선(5호선 연장) 1-2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개요 1부.

하남선(5호선 연장) 1-2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

□ 공사개요

- 위 치 : 고덕차량기지 ~ 강동구 강일동(하나님의 교회 앞) ~ 서울시계
- 사업기간 : '15. 3. 30. ~ '21. 6. 30.
- 총 연 장 : 본선 470.8m, 입출고선 1,347.8m
- 총사업비 : 50,744,900천원
- 계약업체 : 쌍용건설(주) (건설사업관리단 : (주)대한콘설턴트)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2023가합102309(서울중앙지방법원)
- 당 사 자
 - 원고 : 쌍용건설(주)
 - 피고 : 서울특별시
- 원고소가 : 4,117,520천원
- 사건개요
 -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연장된 것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, 지장물 이설 지연, 인접공구 공정간섭 등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,
 - 4,5차분 계약의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 총 4,117,520천원을 지급할 것을 구함.
 - 4차분 변경계약(총3회)을 통해 연장된 890일에 대한 간접비 : 2,989,080천원
 - ▷ 당초 : '18.3.12.~'18.7.25. → 변경 : '18.3.12.~'20.12.31.
 - 5차분 계약을 통해 연장된 181일에 대한 간접비 : 1,128,440천원

□ 추진 경위

- '23. 12. 13. : 소장 접수(송달일 : '24. 1. 8.)
- '24. 2. ~ 5. : 쌍용건설 관계자(당시 현장소장) 면담(3회)
 - 서울시(건설사업관리단)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간접비 금액(2,238,608천원)에 대해 협의 할 의사가 있음.
- '24. 5. 16. :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
 - 참 석 자 : 도철토목부장(위원장), 토목1과장(간사), 위원6(외부3, 내부3)
 - 심의결과 : 건설사업관리단 간접비 검토금액으로 원고와 합의하는 것이 적정함.
- '24. 5. 27. :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회신(시공사→본부)
 - 간접비 최종 금액(2,238,608천원)에 대해 동의함.
- '24. 6. 11. : 간접비 청구소송 대응방안 방침 수립 및 통보(본부→법률지원담당관)
 -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결과 및 현재 간접비 관련 소송추이를 감안할 때 계속 소송 수행 시 우리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
 -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으로 법률지원담당관에 본부 의견 통보
 -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원고측과 간접비 관련 합의 조치
- '24. 6. 20. : 화해권고 결정(법원) ※ 확정일 : '24. 7. 2.
 - 피고는 원고에게 2024.11.30.까지 2,238,608,000원을 지급한다.
- ※ '24. 7. 2. : 원고, 피고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 제출

<화해권고 결정사항>

- ▷ 피고는 원고에게 2024.11.30.까지 2,238,608,000원을 지급한다.
- ▷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▷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- ▷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- '24. 11. 8. : 예비비 사용 계획 방침 수립
- '24. 11. 21. :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(예산담당관→도철토목부)
- '24. 11. 25. : 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(도철토목부→총무부) ※ 지급일 : '24. 11. 28.

□ 판결금 지급현황

- 지급금액 : 2,238,608,000원